

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심사 대상 범위(제33조 및 제34조 관련)

임용하려는 결원 수	승진심사 대상 범위
1명	결원 1명당 10배수
2명	결원 1명당 8배수
3명 ~ 5명	결원 1명당 6배수
6명 ~ 10명	결원 5명을 초과하는 1명당 3배수 + 30명
11명 이상	결원 10명을 초과하는 1명당 2배수 + 45명

비고: 1명의 주당 총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으로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내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결원을 1명으로 본다.